

## 2024학년도 조리실무사 최종 합격자명단

구 분	접 수 번 호	성 명	비 고
조리실무사	1	이**	

###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
- 기본증명서
-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- 급식 관련 직종만 해당 제출
- 경업확인서
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

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의5서식] <개정 2019. 6. 12.>

##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	성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명)
대상자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전주완산경찰서장 귀하

### 유의사항

-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)
-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균영여자고등학교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범죄경력 유무 조회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범죄경력 유무 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상자      본인

성     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# 겸 업 확 인 서

소속 :

직종 :

성명 :

위 본인은 전라북도교육청 \_\_\_\_\_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현재 까지

1. 근무기관	
2. 직종	
3. 근무기간	
4. 담당업무	

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,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「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」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확 인 자

(서명)

근영여자고등학교(기관)장 귀하

#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전라북도교육감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\*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

### 결격사유

-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람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
  9.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
  10.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
  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사람
  12.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확인자: (서명)

근영여자고등학교(기관)장 귀하